

## 구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

### 재산의 표시

- 소재지 : 서울 중구 인현동2가 50-2 은성빌딩 202호
- 지목(구조) : 건물(철근콘크리트)
- 면적(건물면적) : 30.0m<sup>2</sup>(9평)

**사용기간** : 2015. 11. 7 ~ 2016. 11. 6(1년)

**사용목적** : 중구문화원 물품 보관 창고

**사 용 료** : 무상

**허가조건** : 별첨

-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이행,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사항 포함

**신청인 주소** :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(한화빌딩 1층)

**성명** : 김 장 환(중구 문화원장)

2015년 10월 28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.

2015년 11월 5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인)



# 허 가 조 건

---

제1조(사용목적) 사용목적은 중구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시상 작품, 중구문화원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토록 한다.

제2조(사용기간) ①사용기간은 2015년 11월 7일로부터 2016년 11월 6일까지로 한다.

② 사용기간은 개시일부터 1년으로 하고, 1년단위로 재협약(연장)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는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 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3조(사용료)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.

제4조(손해보험증서의 제출)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 중구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)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,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.

제6조(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)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

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사용인의 행위제한)** 사용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1.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
2.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
3.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

**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청사, 관사, 학교, 병원, 도서관,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 중구가 직접 사무용·사업용에 필요할 때
2. 도로, 공원, 하천, 제방, 우수지,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
3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
4.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
5.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

**제9조(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)**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중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.

**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요청)**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사용재산의 반환)**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 중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12조(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)**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 중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)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4조(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)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, 사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허가재산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한다.

제15조(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)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·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6조(분쟁 및 해석)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7조(특약사항) 위 재산은 세운상가구역 제3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인가조건으로 우리구에 무상귀속된 토지상 양호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관리관을 이관받아 사용하는 것이므로 세운상가구역 재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시행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.